

# 2019년도 해외홈쇼핑 방송판매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연장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2019년도 해외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홈쇼핑 방송 및 판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 홈쇼핑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7월 16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 1. 사업개요

### □ 사업명 : 「2019년도 해외홈쇼핑 방송판매지원사업」

-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하여 홈쇼핑 대기업 해외플랫폼활용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및 해외마케팅 활동 촉진

### □ 사업내용

- TV홈쇼핑 5사 해외플랫폼 및 인프라를 활용, 제품수출을 희망하는 방송후보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외홈쇼핑 방송 및 판매를 지원

### □ 총 11개국 25개 해외홈쇼핑 방송채널 활용

구 분	진출현황	진출내용
CJENM	5개국 5개채널	중국(천천 CJ), 태국(GCJ), 베트남(SCJ), 필리핀(ACJ), 말레이시아(MPCJ)
GS홈쇼핑	7개국 7개채널	중국(해매상성), 태국(True GS), 인도(Homeshop 18), 인도네시아(MNC SHOP), 베트남(VGS SHOP), 말레이시아(Astro GS), 미국(MBC America)
롯데홈쇼핑	4개국 7개채널	대만(모모홈쇼핑, 동삼홈쇼핑), 태국(TVD모모), 일본(QVC, Shop Channel), 인도네시아(Lejel, O shop)
현대홈쇼핑	7개국 8개채널	태국(HIGH Shopping), 베트남(VTV Hyundai), 대만(동삼홈쇼핑), 인도네시아(Lejel, O Shop), 호주(ASN), 필리핀(Shop TV), 일본(QVC)
공영홈쇼핑	3개국 3개채널	필리핀(HSN홈쇼핑), 태국(Star K), 인도네시아(Lej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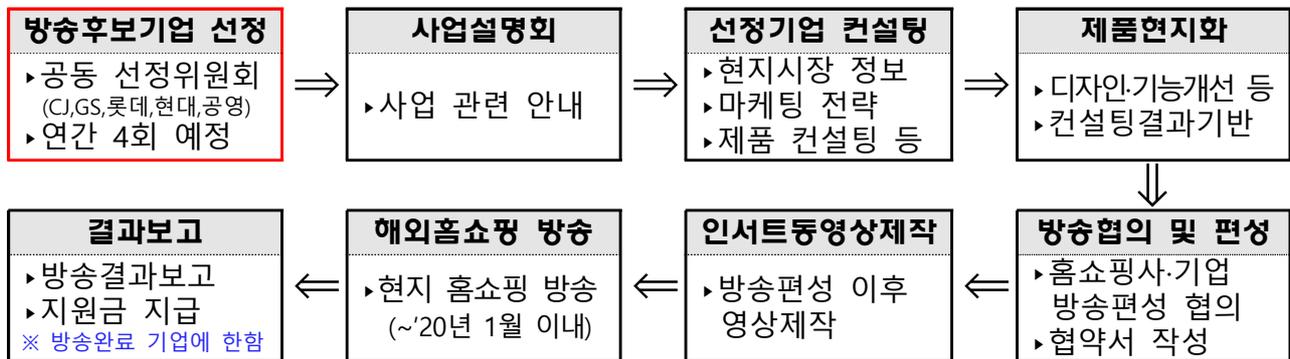
\* 홈쇼핑사의 해외 JV 사 및 현지 협력 홈쇼핑사 활용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

[ 국가별 선호 품목 군 ]

국가명	플랫폼명	선호 품목
중국	천천CJ	1. 주방가전(쥬서기,에어프라이어, 믹서 등)
	헤매상성	1. 주방가전(밥솥, 녹즙기 등), 2. 이미용품(샴푸, 콜라겐)
베트남	SCJ	1. 건강식품(홍삼), 2. 생활용품(세제), 3. 주방용품(냄비 등)
	VGS Shop	1. 생활가전(다리미, 냉풍기 등), 2. 잡화(시계), 이미용품(샴푸, 크림)
	VTV	1. 주방용품, 2. 생활용품, 3. 이미용 제품
태국	GCI	1. 운동기구, 2. 주방용품, 3. 화장품
	True GS	1. 이미용품(콜라겐 등), 2. 주방가전(블렌더)
	TVD MOMO	1. 주방용품, 2. 화장품, 3. 생활용품
	HIGH	1. 주방용품, 2. 생활용품, 3. 이미용 제품
	Stark 방송채널	1. 화장품, 2. 생활용품
필리핀	ACJ	1. 주방가전, 2. 운동기구, 3. 생활용품
	HSN홈쇼핑	1. 생활용품, 2. 주방용품, 3. 가전·공구
	SHOP TV	1. 주방용품, 2. 생활용품, 3. 이미용 제품
말레이시아	MPCJ	1. 운동기구, 2. 주방용품, 3. 생활가전
	Astro GS	1. 주방용품(밥솥, 냄비) 2. 이미용품(에센스)
인도	Homeshop18	1. 생활용품, 2. 건강용품(무릎보호대 등)
인도네시아	MNC Shop	1. 건강용품(건강목걸리, 무릎보호대), 2. 잡화(시계 등), 3. 생활가전
	레젤	1. 잡화, 2. 생활용품, 3. 건강용품
	O Shop	1. 주방용품, 2. 잡화, 3. 생활용품
대만	모모홈쇼핑	1. 화장품, 2. 생활용품, 3. 의류, 4. 건강식품
	동삼홈쇼핑	1. 주방용품, 2. 생활용품, 3. 이미용 제품
일본	QVC	1. 건강식품, 2. 화장품, 3. 생활용품, 4. 건강용품
	Shop Channel	1. 건강식품, 2. 화장품, 3. 생활용품, 4. 건강용품
호주	ASN	1. 주방용품, 2. 생활용품, 3. 이미용 제품
미국	MBC America	-

\* 국가별로 선호하는 품목 군이며, 해당 제품 이외의 품목군도 가능성이 있음.

□ 사업 추진절차



## 2.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기 지원 받은 제품은 지원 대상 제외

## 3. 지원내용

□ 해외홈쇼핑 방송을 위한 동영상 제작비 및 제품 현지화 비용 지원

구분	세부지원내용	정부지원금 한도 (부가세 제외)	비고
동영상 제작	○ 인서트 동영상 제작 ○ 현지 방송 영상 제작	실 소요비용의 70% 이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업체부담 : 실 소요비용의 30% 이상
제품 현지화	○ 해외진출을 위한 제품현지화 (디자인, 기능 및 성능개선 등)		

\* 동영상 제작 및 제품 현지화 비용은 해외플랫폼을 통해 **방송완료 된 기업에 한하여 지급**

□ 연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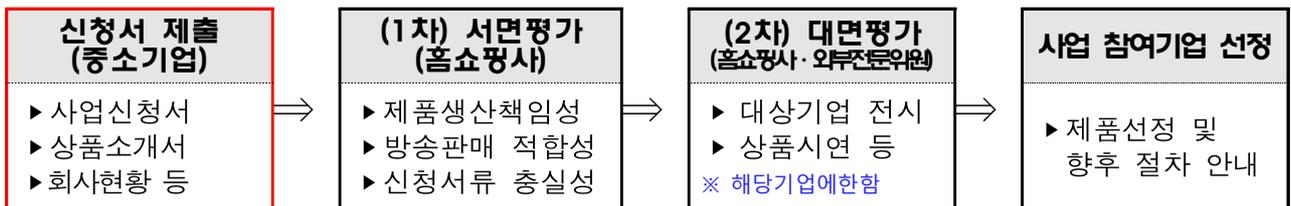
- 선정된 방송후보 중소기업 중 현지 방송 판매 시 인증이 필요한 경우, KTR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5점)

## 4.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중소기업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거쳐 방송후보기업 최종 선정

\*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별도 안내



① 서면평가 (7.22(월) ~ 8.2(금) 예정)

- 모집공고문에 첨부된 서면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사업 신청서를 평가 후 그 결과를 취합하여 대면평가 대상기업 선별

\* 서면평가 항목은 모집공고문 7페이지 참고

② 대면평가 (8.22.(금) 코엑스 Hall A)

- 대면평가 대상기업별 실물확인 가능한 제품 샘플 및 소개 자료 전시
- 평가위원이 제품 실물확인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최종선정회의를 통해 방송후보기업 선정

※ (참고) 각 흡쇼핑사별 해외초청 MD 상담 동시 진행 예정

### 5. 신청안내 (2019 글로벌 비즈니스 소싱페어 연계 운영)

□ 신청기간 (3차 모집연장)

- '19. 7. 3.(수) ~ '19. 7. 19.(금) 20:00 까지 (마감기한 엄수)

- 서면평가 결과발표 : 8. 7.(수), 신청서에 작성해주신 담당자 이메일로 결과 안내
- 대면평가 : 19. 8. 22.(목), 코엑스 HALL A (대면평가 미참석 시 선정 불가)

[ 참고 : 2019년도 해외흡쇼핑 방송판매지원사업 모집 및 선정 계획 ]

구분	중소기업 신청서 제출	선정평가			
		서면평가		대면평가	
		평가일자	결과안내	평가일자	결과안내
3차	7. 3. ~ 7. 19	7. 22. ~ 8. 2.	8. 7.	8. 22.	8. 27.
4차	10. 14. ~ 10. 28.	10. 30. ~ 11. 13.	11. 15.	11. 20.	11. 22.

\* 3차 모집 대면평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소싱페어와 연계 운영 예정

\*\* 상기 모집 및 평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추후 재단 홈페이지 참조)

## □ 신청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 후 회원가입 및 기업 기본 정보·신청 제품 정보를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접수 링크 : [https://mng.gobizkorea.com/sourcing/sourcing\\_pro\\_homeshopping.jsp](https://mng.gobizkorea.com/sourcing/sourcing_pro_homeshopping.jsp)

### ※ (참고) 2019 글로벌 비즈니스 소싱페어

- 주최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중앙회, KOTRA, 한국무역협회
- 일자/장소 : 2019. 8. 21.(수) ~ 22(목) / 코엑스 HALL A
- 규모 : 해외 바이어 200개사, 국내기업 1,000개사 등
- 주요 프로그램 : 테마전시관(상품시연 및 체험), 수출상담회, 해외 홈쇼핑 입점 품평회, 피칭, 리셉션 등
- 세부 프로그램

#### ① 해외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사업 대면평가(8.22)

- 해외 판매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기제품을 선정하여 홈쇼핑사의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 홈쇼핑 방송 및 판매지원을 위한 대면평가 추진

#### ②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8.21 ~ 8.22) [신청가능]

- 해외 홈쇼핑 등 전 세계 온오프라인 바이어 200개사 초청 수출상담 지원

#### ③ 우수제품 쇼케이스(8.21 ~ 8.22) [신청가능]

- 우수유망기업 상품 쇼케이스 전시를 통해 해외 바이어 및 국내 참가 기업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 및 바이어 대상 소싱 지원

\* 본 행사를 통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 상담 및 제품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자 ②~③ 프로그램 모두 신청 가능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우수 상품 시연 및 체험전, 포럼 등은 별도 모집 일정에 따라 참여 기업 모집 예정 (추후 고비즈 코리아 홈페이지 안내)

□ 가점부여(증빙서류 미비 시 가점부여 없음)

- R&D 매출성과 우수기업\*, R&D 집약기업\*\*

\* ROI(정부출연금 대비 관련제품 매출액)이 5배 이상인 우수과제

\*\* 재무제표 상 R&D집약도(총 매출액 대비 총 R&D투자율) 3% 이상인 기업

- 일자리안정기금지원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혁신성장기업, 명문장수기업, KTR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기업

□ 문의처

관 리 기 관 명		연락처
사업 수행기업	나이스평가정보 동반진출 관리지원팀	02-6678-4463
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54

※ 안내사항

- 사업 참여 중소기업으로 선정 시 매칭된 홈쇼핑사와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외홈쇼핑 방송 추진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사업공고, 선정기업 관리, 제품현지화 및 동영상 제작비용 지원, 사업 결과보고 접수 등 사업 총괄
- 방송준비과정 중 현지사정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방송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방송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 [붙임1] 해외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서면평가항목

## <서면평가항목>

평가 항목	기 준
1. 제품 생산 책임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직접 생산(공장보유) (10점)</li> <li>○ 제품 OEM 생산 (7점)</li> <li>○ 제품 판권 보유기업(유통기업) (5점)</li> </ul>
2. 해외홈쇼핑 방송판매 적합성 (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쇼핑 방송 판매경험 유무(10점) (해외홈쇼핑 10점, 국내홈쇼핑 7점, 방송경험 없음 5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출희망국가 인·허가 취득현황(10점)(사업 신청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출희망국가” 의 인·허가 취득 혹은 필요 없음(10점)</li> <li>- 진출예정(희망)국가 인·허가 취득 예정(7점)</li> <li>- 인·허가 취득사항 없음(5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업 담당 전담인원 유무(10점) (전담인원 보유 10점, 전담인원 미보유&amp;인력충원계획 등이 있는 경우 7점, 전담인원 미보유&amp;충원계획 등이 없는 경우 5점)</li> <li>* 중·장기 인력충원계획, 신규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교육훈련비, 자기계발비, 기업 내 업무 인력 관련 전문 프로그램 및 전담인력 보유 정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홈쇼핑 방송 적합도(30점)</li> <li>* 해외홈쇼핑 현지 MD 의견 반영한 적합도 평가(홈쇼핑사)</li> </ul>
3. 일자리평가 (30점)  <붙임2>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개요 및 평가항목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00점을 30점으로 산출하여 반영</li> <li>&lt;일자리양&gt; (7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증가율)</li> </ul> </li> <li>&lt;성과공유&gt;(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성과공유 협약 &lt;붙임3&gt;미래성과공유 협약방법 참고</li> <li>○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li> <li>○ 우리사주조합 운영 / 스톡옵션 운영</li> </ul> </li> <li>&lt;근로환경&gt;(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 전환 / 일자리 함께하기</li> <li>○ 가족친화 인증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li> <li>○ 노사문화 우수기업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li> <li>○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li> </ul> </li> </ul>
4. 가점 (최대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집약기업(1점) / R&amp;D 매출성과 우수기업 여부(1점)</li> <li>○ 명문장수 기업 여부(1점) / 일자리안정자금지원기업(1점)</li> <li>○ 지역혁신성장기업(1점) / 사회적경제기업(1점)</li> <li>○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1점)</li> </ul>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폐업 중인 기업</li> <li>○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li> <li>○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동일제품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li> </ul>	

## [붙임2]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개요 및 평가항목

1. 개요 :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우수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 (구)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19년부터 명칭 변경)

2. 절차 : 중소기업이 사업신청 시, 자동으로 관련기관 DB를 활용하여 확인·검증 후 평가점수 반영

### 3.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20~100													
I. 일자리 양	1.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r><td>상위 10%</td><td>+70</td></tr> <tr><td>상위 20%</td><td>+60</td></tr> <tr><td>상위 30%</td><td>+50</td></tr> <tr><td>상위 40%</td><td>+40</td></tr> <tr><td>고용유지</td><td>+30</td></tr> <tr><td>고용감소</td><td>+20</td></tr> </table>	상위 10%	+70	상위 20%	+60	상위 30%	+50	상위 40%	+40	고용유지	+30	고용감소	+20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상위 10%	+70															
상위 20%	+60															
상위 30%	+50															
상위 40%	+40															
고용유지	+30															
고용감소	+20															
II. 일자리 질	1.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나. 내일채움공제 (+5) 다. 청년내일채움공제 (+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5) 마. 스톡옵션 운영 (+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2. 근로환경	가. 정규직 전환 (+10) 나. 일자리 함께하기 (+10)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III. 고용질서 준수	1. 법령 준수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20													

## ※ (참고)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관련 제도개요 및 문의처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li> <li>▪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5), <a href="https://sanhakin.mss.go.kr">https://sanhakin.mss.go.kr</a></li> </ul>
내일채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li> <li>▪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a href="https://www.sbcplan.or.kr/">https://www.sbcplan.or.kr/</a></li> </ul>
청년내일채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16백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공제제도</li> <li>▪ (문의처)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a href="http://www.work.go.kr/jobcenter">http://www.work.go.kr/jobcenter</a></li> </ul>
우리사주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li> <li>▪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a href="https://esop.ksfc.co.kr">https://esop.ksfc.co.kr</a></li> </ul>
스톡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li> <li>▪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a href="https://sanhakin.mss.go.kr">https://sanhakin.mss.go.kr</a></li> </ul>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수령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li> <li>▪ (문의처) 고용부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a href="http://www.work.go.kr/jobcenter">http://www.work.go.kr/jobcenter</a></li> </ul>
일자리 함께하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 인건비 및 임금감소보전액 지원</li> <li>▪ (문의처) 고용부 고용복지+ 센터 (1350), <a href="http://www.work.go.kr/jobcenter">http://www.work.go.kr/jobcenter</a></li> </ul>
가족친화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li> <li>▪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8), <a href="http://www.ffsb.kr">http://www.ffsb.kr</a></li> </ul>
청년친화강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li> <li>▪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a href="http://www.work.go.kr/smallGiants">http://www.work.go.kr/smallGiants</a></li> </ul>
노사문화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li> <li>▪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a href="https://www.nosa.or.kr">https://www.nosa.or.kr</a></li> </ul>
인재육성형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li> <li>▪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a href="https://sanhakin.mss.go.kr">https://sanhakin.mss.go.kr</a></li> </ul>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li> <li>▪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a href="http://www.hrdkorea.or.kr">http://www.hrdkorea.or.kr</a></li> </ul>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li> <li>▪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a href="http://www.kosha.or.kr">http://www.kosha.or.kr</a></li> </ul>

## [붙임3] 미래성과공유 협약방법 (미래성과공유기업 확인방법)

### □ 미래성과공유기업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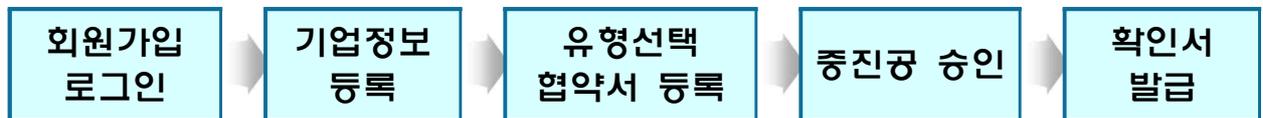
→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과공유제도(①~⑥) 성과공유 유형중 한 개 이상을 미래에 도입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 성과공유 7가지 유형 >

- ① 경영성과급    ②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청년공제)    ③ 임금상승률  
④ 우리사주제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⑥ 주식매수선택권

□ **신청사이트**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sanhakin.mss.go.kr>)

### □ 온라인 협약신청 절차



- ① 기업회원가입 미 로그인
- ② [신청관리 -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 클릭
- ③ [기업정보 등록] 탭 :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
- ④ [협약내용 및 협약서 출력] 성과공유 유형중 1개 이상 선택, 출력
- ⑤ [서명 협약서 등록] 출력한 협약서에 대표자 및 근로자 대표의 서명 후 스캔파일을 등록
- ⑤ 중진공(메인비즈) 승인 → (1~2일내 승인)
- ⑥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출력

### □ 확인서의 유효기간

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하고 발급받은 확인서는 최초1회만 인정, 유효기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성과공유 실적 증빙하는 서류 제출하여 확인받으면 성과공유 도입기업 전환

□ **[문의처]** 메인비즈협회 ☎ 02-2230-2120

중소기업진흥공단 : ☎ 055-751-9829(9825)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에 혜택적용

구분	지원혜택
금융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 창업기업지원자금(일자리창출촉진-인재육성 부문)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만 해당
가점	· 중소기업지원사업(R&D, 수출 등 44개) 평가 시 '고용영향 평가' 항목에 점수 반영(20점 → 30점 상향예정)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 시 점수 반영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점수 반영
홍보	· 존경받는기업(26개), 인재육성형중소기업(누적 855개) 등 성과공유 도입 우수기업을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 · 성과공유 모범기업 우수사례집 수록
세제 (예정)	· (기업 세제지원)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근로자 세제지원) 중기 근로자가 경영성과급 수령 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 조특법 19조 개정완료, 시행령 개정 중으로 지원 미확정

[성과급 유형의 세제지원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8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번호 : 제2018-000013호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사업자번호(법인번호) 111-11-11126(111111-1111126)

기업명 test16

대표자명 대표16

유효기간 2018년 12월 13일 ~ 2019년 12월 12일

위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임을 확인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성과 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성과공유 유형 >

성과공유 유형	성과공유도입기업	미래성과공유기업
① 성과급 지급		○
②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
③ 임금수준의 상승		
④ 우리사주제도 운영		
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⑥ 주식매수선택권제도 부여		○
⑦ 기타유형 *		

\* ⑦ 기타유형: 인재육성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2018년 1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부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